

지회운영규정 확정안

2022. 1.13일 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이하 “본회”이라 한다)의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 산하 지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경기지회, ○○지회” 등으로 해당 도 또는 광역시(지역명)지회로 하며, 약칭으로 농재협 ○○(지역명)지회라 칭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지회별 관할구역에 두며, 각 지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 지회의 주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내 회원관리 및 신규회원 가입 촉진
2. 손해평가 현장업무를 위한 반편성 및 업무배정 등과 관련한 업무
3. 손해평가를 위한 회원 교육 사업
4. 기타 지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 ① 지회 회원은 본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지회별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자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본회의 회비를 납부하고 지회에 입회하여 지회 운영회칙이 정한 의무를 이행한 자를 말한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손해평가사
 2.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3. 농어업정책보험 조사·연구 업무 종사자
- ③ 준회원은 본회에 입회한 자 중 제②항에 해당하지 않은 자
- ④ 타 지회로부터 전입해 온 회원은 관할지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입받은 지회에서는 본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지회의 정회원은 지회의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의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지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임원 선출시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 ③ 지회의 정회원은 손해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지회의 회원은 회칙과 지회 결정사항의 준수 등 지회 운영회칙에서 정한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결격사유)

- ① 본회 정관 제8조(회원 자격상실), 정관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규정 제6조(회원자격 상실), 제6조의 2(회원 자격정지)에 해당되었을 때는 회원규정 제7조(복권 및 재가입)에 의해 복권되기까지 지회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 ② 본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지회의 회칙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9조(회원 명부관리) 지회장은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회원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지회장은 정관 제9조2의제2항에 따라 소속 지회 회원의 징계처분 발생 시 지회에서 자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호와 같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주의. 경고.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의결하여 처리 할 수 있다.
- ② 3개월 이상의 회원자격 정지 등 중대한 경우에는 본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본회 이사회에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반 및 업무 배정)

- ① 지회장은 소속 정회원으로 농작물 조사반 및 가축 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 ② 농작물 조사반은 30-50명 이내로 편성하며, 이때, 조사반에는 소속 지회원이 7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조사반 인원 및 타소속 지회원의 포함 비율은 본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가축전담반은 소속지회 정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조사반별·전담반별 업무배정은 검증조사 등 관련기관의 처벌사항과 개인별 성과 등을 반영하여 배정한다.
- ⑤ 개인별 업무 배정은 조사반장·전담반장이 실시한다.

제 3 장 임원

제12조(임원의 구성)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명
2. 운영위원 3명 이상 7명 이내(사무국장 1명 포함)로 하되, 지회 형편에 따라 증원 가능
3. 감사 2명 이하(다만, 정회원 50명 이내의 지회는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 ① 지회장, 감사는 지회 정회원으로 연속해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지회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협회장이 임명한다.
- ② 지회장은 선출 후 10일 이내에 전임지회장과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 ③ 운영위원은 소속 정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 ④ 감사는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다만, 정회원 50인 이하인 지회는 제12조3호에 의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지회의 임원선출 선거는 본회의 “임원선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에 대한 사항은 지회에서 정한다.
-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 ①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 업무를 총괄하며, 지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사무국장은 지회 회칙에 따른 회원관리, 회비의 징수 및 운영과 지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며 회장 궐위 시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지회의 재정운영 및 업무집행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회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지회의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 2. 지회의 결산안 심의
- 3. 지회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4. 지회총회에 부의할 사항
- 5. 지회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6. 기타 지회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지회장이 소집한다.
- ② 지회장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직원의 임명) 지회에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해임 및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 ① 지회 임원이 본회 및 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또는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회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② 지회 임원이 본회 정관 제11조의 2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 4장 회의

제20조(지회 총회)

- ① 지회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회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부의안건 등을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는 지회장 또는 지회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로 개최하며, 지회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부의 안건 등을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 ① 지회 총회 부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승인
 2. 감사보고의 승인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기타 지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전항 제1호, 제3호 사항은 지회 총회 의결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지회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 ③ 회원이 사전에 서면 또는 메일 등으로 회의 참석 및 의결을 위임한 경우는 출석 및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제 5장 회계

제23조(예산과 회계운용)

- ① 지회의 예산 편성과 결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운용은 본회 규정에 따른다.
- ②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재정) 지회는 다음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협회로부터 교부받은 지회지원금
2. 지회 회원의 연회비
3. 찬조금 및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 6장 지회 감독권

제25조(협회장의 감독권)

- ① 협회장은 지회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협회장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회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업무보고) 지회장은 총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해산과 청산)

- ① 지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로써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2. 지회 정회원수가 10인 미만일 때

- ② 지회를 해산한 때, 청산인의 권한은 협회장이 행사하며, 해산지회의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제 7장 기타

제28조(지회운영회칙)

- ① 지회운영 회칙은 본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운용하고,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 등 제규정을 적용한다.
- ② 지회에서 운영 회칙을 제·개정시에는, 제·개정된 회칙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지회에서 선출된 지회 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각종 지회 운영회칙 등 제규정은 지회총회에서 개정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별표 1]

지회별 명칭과 관할구역(제4조 관련)

지회명칭	관할구역	비 고
경기지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지회	강원도	
충북지회	충청북도	
충남지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북지회	전라북도	
전남지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북지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남지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	